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7 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양부남·강유정·민병덕

박수현 • 박해철 • 박희승

신정훈 · 염태영 · 정진욱

황정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,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,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행정·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,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,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(안 제56조의3 신설)
 - 1)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·영향도 등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 마 련하도록 함.
 - 2)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기준을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.
- 나.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 · 운영(안 제56조의4 신설)
 - 1)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·운영의 근거를 마 련함.
 - 2)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3을 제56조의5로 하고,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3(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·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,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류 결과를 검토하여 변경·확정하고,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,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의4(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

- 은 정보시스템 장애 정보의 수집·전파,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6조의3(정보시스템의 등급 관
	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
	기관등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
	•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
	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
	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
	산정 기준을 정하고, 등급에
	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
	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
	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
	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
	제출하여야 한다.
	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등급산정
	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제
	출받은 분류 결과를 검토하여
	변경・확정하고, 그 결과를 행
	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
	<u>한다.</u>
	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
	분류,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
	리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
	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

<신 설>

<u>소규칙</u>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의4(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 등) ① 행정안 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정보의 수집·전파,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·운영할수 있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 템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 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제56조의5</u> (현행 제56조의3과 같음)

제56조의3 (생략)